

의안번호	2215385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5. 3. 30.
추 계 번호	25D71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급여액 산정 시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500만원(연평균 7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순직 군인의 특별진급을 급여액 산정 시 반영 (안 제9조)	7	7	7	7	7	35	7

주: 1. 순직 군인의 특별진급을 급여액 산정 시 반영(안 제9조)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은 매년 5명이 발생하여 동법에 따른 퇴직수당 산정 시 특별진급을 반영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	의무규정
2	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X	병적 전환 종류별 인원, 평균 복무기간, 군간부후보생 평균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O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 후 특별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증액되는 급여는 퇴직수당이고 특별진급 반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증가율은 군인 봉급표를 활용하여 추정
- 순직 군인의 연금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근거하므로 동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기준소득월액에는 봉급¹⁾과 8개 수당 평균액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8개 수당 또한 직급과 봉급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증가율을 군인 봉급표를 활용하여 추정
 - －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개인별 과세소득액 - 개인별 8개 수당 지급액 + 직종·직급별 8개 수당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 보수상승률)
 - － 8개 수당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말함
 - － 본 추계에서는 순직 후 특별진급한 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구성하고 있는 봉급, 수당 등 항목에 구분 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²⁾

1) 이때, 봉급은 군인 봉급표 상의 금액을 말하며 보수월액(={봉급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월)과 다름

2)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봉급과 수당 등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하는 군인이 매년 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은 총 25명으로 연평균 5명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퇴직수당 산정 시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하는 군인의 수를 매년 5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퇴직수당 증가액을 곱하여 산출
 - (대상자 수)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하는 군인은 매년 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증가액) 특별진급을 반영하여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7년 기준 1인당 증가액은 130만원, 2031년 147만원으로 추정
 - 퇴직수당산식: 기준소득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별 지급비율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순직 승인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3,227,570원이고 개정안에 따라 진급된 계급 적용 시 3,502,960원
 -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은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공무원보수 평균 상승률에 따라 상승
 - 추정된 기준소득월액, 4.3배³⁾을 적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퇴직수당과 개정안에 따라 증액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 퇴직수당의 차액을 산출

개정안에 따라 특별진급을 반영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봉급(군인 봉급표 기준)만 증가하고, 8개 수당 평균액은 1년 후에 결정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특별진급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 기 확정된 전년도 8개 수당 평균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8개 수당 평균액도 봉급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3) 국방부에서 제공한 2018~2022년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평균 퇴직수당 지급액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평균 재직년수와 지급비율을 곱한 배수가 4.3으로 추정

[표 2]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1인당 퇴직수당 증가액 추정: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기준소득월액 (a, 원)	현행	3,543,974	3,650,293	3,759,802	3,872,596	3,988,773
	개정안	3,846,360	3,961,751	4,080,604	4,203,022	4,329,113
퇴직수당 (b=a×4.3배, 만원)	현행(c)	1,524	1,570	1,617	1,665	1,715
	개정안(d)	1,654	1,704	1,755	1,807	1,862
1인당 퇴직수당 증가액 (=d-c, 만원)		130	134	138	142	1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급여액(퇴직수당) 산정 시 진급된 계급을 반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7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특별진급을 반영한 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 비용: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상자 수(A, 명)	5	5	5	5	5	—
증가액(B, 만원)	130	134	138	142	147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7	7	7	7	7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이 매년 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